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수탁자 선정 시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행정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반영 (안 제8조)
 - 수탁자 선정 시 일반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모집대상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8, FAX : (043)740-30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